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제·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### 【총무과】

- “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”으로 농산사업소장에게 ‘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권’ 사무를 위임

### 【환경과】

- “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”이 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된 ‘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에 관한 사무’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을 위임

**【교통과】**

- “주차장법” 개정으로 ‘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’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권한의 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권한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
  - ‘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’ 등의 사무가 시장·군수에서 도지사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며,
  -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 개정으로 ‘화물자동차운수업무’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권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함.

**【도로과】**

- 원거리 주민편익제고를 위하여 ‘도유 행정재산(도로)의 관리 및 사용허가’ 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을 위임

**5. 검토의견**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금번 조례개정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,
- 교통과 소관 중 관련법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“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업무”와 “화물자동차 운수업무”는 권한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,
  - ※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: 도지사→시장·군수 (주차장법, 2003.12.31)
  - 화물자동차 운수업무 : 도지사→건설교통부장관  
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2004.1.20)
- 총무과 소관은 금년 2월 7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

설치된 농산사업소장에게 “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”을 위임하는 것이며,

※ 농산사업소 = 종사생산시험장+잠사군이시험장+종자보급소

○ 환경과 소관 “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”과 교통과 소관 “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”, 도로과 소관 “도유 행정재산(도로)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에 관한 사항”은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○ 환경과 소관 “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”은 위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,

※ 1. 위임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?

2. 위임에 따른 시군 인력증원의 필요성, 시군별 업무량 실태, 업무수행 능력 및 장비확보 등 인력 및 예산 수반 문제

○ 교통과 소관의 화물자동차 운수업무는 집단적인 운송 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권한을 상향조정한 것인바 “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”를 시군에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,

○ 도로과 소관 “도유 행정재산(도로)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”의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도유 행정재산(도로)는 지방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혼돈 될 우려가 있음.

위임하고자하는 취지의 재산은 폐도, 마을진입로 등이므로 (법정도로외의 도로 or 도로법 제11조 이외의 도로)로 수정할 필요성 있음

※ 도로법 제11조(도로의 종류와 등급)

1. 고속국도
2. 일반국도
3. 특별시도·광역시도
4. 지방도
5. 시도
6. 군도
7. 구도

**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**